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42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정태호의원안, 정 부안)	5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7. 30.
-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

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65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제59조의2) ○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 <u>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u> ○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인 신청·청구일 것 -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청구일 것	○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 ○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 <u>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고충민원 신청인</u>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정부안) - 공포 후 3개월(정태호의원안)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5. 7. 30. 발의(의안번호 1184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현행법은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국선

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하려는 것임.

□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59조의2¹⁾에 따라 2014년 처음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하여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인정되었으나, 2016년 개정으로 심판청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 검토 및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함.

한편, 2024년 12월말 현재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²⁾이 활동하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3.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4년 기준 세무사 273명, 공인회계사 18명, 변호사 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건당 30만원(참석수당 15

고 있음.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건수	385	283	256	237	413	396	415	541	499

주: (2019년 이전) 이의신청·심사청구 → (2020년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자료: 국세청

[유형별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단위: 건)

유 형	2022년	2023년	2024년
불복청구 전 신청	71	99	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23	163	152
이의신청	213	272	273
심사청구	8	7	7
합계	415	541	499

주: 2024년 말 기준 국선대리인은 총 320명으로 1인당 1.56건 처리
자료: 국세청

□ 국선대리인 제도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충민원³⁾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국선대리인 지원

만원 + 진술수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범위를 기존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 한정하지 않고,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세불복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조세불복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특히,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조세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충민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2024년 기준 7.1%였으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

제43조의3(국세 환급가산금)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2.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인용률]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선대리인 선임	31.3	16.3	21.0	22.9	21.0	17.0	20.3	16.3	22.8
대리인 미선임*	14.3	13.2	10.3	7.5	8.6	8.1	5.3	5.2	7.1

주: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원 ('23. 2. 28. 개정 전 3천만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 건
자료: 국세청

□ 다만,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인의 범위를 ‘제52조제3항4)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한 고충민원인으로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고충민원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한 동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만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국세 관련 고충민원은 국세환급가산금에 한정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모든 고충민원인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정의의 범위가 협소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다른 고충민원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통령령에 따른 고충민원 신

4)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청인'으로 수정하여 고충민원인에 대한 정의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에 고충민원인 추가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26년 2,200만원, 2030년
2,200만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1억 1,200만원(연평균 2,200
만원)으로 추계하였음.

[향후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소요액	22	22	22	22	22	112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 1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및 주요 개정 연혁

□ 제도 개요

-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제도 내용

- (시행시기) '14. 3. 3. 자체 지침으로 시행 ('14. 12. 23. 국기법 §59조의2 신설)
- (국선대리인) 전국 **320명*** ('24.12월말)

* 세무사 273명, 공인회계사 18명, 변호사 29명

- (신청대상)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상속·증여·종부세 제외)
 -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인 법인

* '19. 12. 31. 법률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 추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 연혁

시행 시기	주요 개정 내용
'14.12.23	○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16.12.20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심판청구인 추가
'18.2.13	○ 청구세액 기준 완화 - 청구세액: 1천만원 → 3천만원
'20.1.1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23.2.28	○ 청구세액 기준 완화 - 청구세액: 3천만원 → 5천만원
'24.4.1.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법인납세자 청구인 추가

□ 제도 개요

- 권리구제가 필요하나 경정청구 기한이나 불복기한의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제절차

□ 제외 대상

- **(대상제외)** 불복청구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납보사무처리규정(§13)에 규정

- ①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③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사항
- ④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 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⑥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⑦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쟁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⑨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설치된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⑩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처리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납보규정 §24) 및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자의 고액 고충민원**(청구세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법률·예규 등에 따라 처리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처리 절차

